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 하고, 경쟁제한적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10조제2항제3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중에서 “4년제 대학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법 제11조의3) 규정 관련 법 제47조(과태료)제2항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다. 기타 법률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및 제13조)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
항보고 및 권한의 위임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등”이라 한다)에” 및 “위험해역등을”를 각각 “위험해역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험해역등의”를 “위험해역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4년제 이상의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출입·점검

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명령

별표 2 제2호나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다목(종전의 라목)의 위반행위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며, 라목(종전의 마목)의 위반행위 중 “제12조제6항” 및 “개선명령”을 각각 “제12조의2제4항” 및 “개선명령 또는 시정”으로 하고, 종전의 가목은 카목으로 하며, 같은 목의 위반행위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하며,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50	70	1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제항해선박등의 통행보고)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u>위험해역 및 위험에비해역(이하 “위험해역등”이라한다)</u> 에 통항(通航)하려는 경우에는 통항하기 24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행보고(이하 “통행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위험해역등을</u> 통항하기 전까지 통행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조(국제항해선박등의 통행보고) ① ----- ----- <u>위험해역을</u> ----- ----- ----- ----- ----- ----- ----- ----- ----- ----- <u>위험해역을</u> ----- ----- --.
1. · 2. (생략) 3. <u>위험해역등의</u> 진입 예정시각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운항정보	1. · 2. (현행과 같음) 3. <u>위험해역의</u> ----- ----- --
제10조(해양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제10조(해양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u> 4. (생략) 제13조(권한의 위임) (생략) 1. (생략) 2. <u>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원 대피처의 설치 여부나 운영실태 등의 점검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보고 요구</u> 3. <u>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u> 4. (생략)	3. 「<u>고등교육법</u>」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 ----- 4. (현행과 같음) 제13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출입·점검</u> 3. <u>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명령</u>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연 락 처	(044) 200 - 5854